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범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952

발의연월일: 2024. 8. 19.

발 의 자: 박범계 · 이기헌 · 황정아

채현일 · 서미화 · 조승래

박정현ㆍ허 영ㆍ장철민

추미애 · 황운하 · 강득구

강준현 · 장종태 의원

(14위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는 소득세를 과세할 때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최 근처럼 물가가 크게 올라 실질소득이 감소할 경우 이를 반영하지 못 하고 있음.

현행법상 소득세는 거주자의 해당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어 물가가 상승하면 개인의 명목소 득은 증가해도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, 근로자가 명목소득에 맞추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 세후 실질소득은 더 줄어들 수 있음.

실제로 지난해 우리경제는 1.4% 성장하였지만 가계의 실질처분소득은 1.2%로 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는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세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음.

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미국, 영국

등 22개국에서는 이미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용하여 이를 반영하고 있음.

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물가 연동지수를 반영하도록 하여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의 세 부담을 완 화하려는 것임(안 제14조). 법률 제 호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(이하 "종합소득과세표준"이라 한다)은 제16조, 제17조, 제19조, 제20조, 제20조의3, 제21조,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,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,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, 제37조, 제39조,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, 제46조의2, 제47조 및 제47조의2에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, 배당소득금액, 사업소득금액, 근로소득금액,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(이하 "종합소득금액"이라 한다)에서 제50조, 제51조, 제51조의3, 제51조의4 및 제52조에따른 공제(이하 "종합소득공제"라 한다)를 적용한 금액에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물가연동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해당연도의 물가연동지수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물가연동지수	= -	기준연도 물가지수
		 해당연도 물가지수

⑥ 제2항에 따른 물가지수 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, 물가상승률,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종합소득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혀 행

개 정 안

제14조(과세표준의 계산) ① (생략)

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(이하 "종합소득과세표준"이라 한다)은 제16조, 제17조, 제19 조. 제20조. 제20조의3, 제21조,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, 제27조 부터 제29조까지,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, 제37조, 제39조, 제 41조부터 제46조까지, 제46조의 2.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, 배당소득 금액, 사업소득금액, 근로소득 금액,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 득금액의 합계액(이하 "종합소 득금액"이라 한다)에서 제50조, 제51조, 제51조의3,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(이하 "종합소득공제"라 한다)를 적용 한 금액으로 한다.

제14조(과세표준의 계산) ① (현 행과 같음)

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(이하 "종합소득과세표준"이라 한다)은 제16조, 제17조, 제19 조, 제20조, 제20조의3, 제21조,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, 제27조 부터 제29조까지,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, 제37조, 제39조, 제 41조부터 제46조까지, 제46조의 2,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, 배당소득 금액, 사업소득금액, 근로소득 금액,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 득금액의 합계액(이하 "종합소 득금액"이라 한다)에서 제50조, 제51조, 제51조의3,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(이하 "종합소득공제"라 한다)를 적용 한 금액에 아래의 계산식에 따 라 산출된 물가연동지수를 곱 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해당 연도의 물가연동지수가 1보다

<u> 큰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</u> <u> 니한다.</u>

물가연동 = 기준연도 물가지수 지수 해당연도 물가지수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제2항에 따른 물가지수 산 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, 물 가상승률, 임금인상률 등을 고 려하여야 한다.

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

③ ~ ⑤ (생 략) <u><신 설></u>

<u>⑥</u> (생 략)